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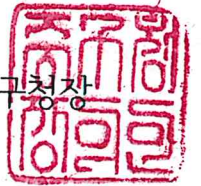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-511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,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
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
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
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8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의안
번호

발의년월일 : 2016년 7월 일
발 의 자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
2014.11 국민권익위원회 『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』에 의거 사용료 반환과
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준용 기준 명시 (안 제7조)

- 제7조 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’라고 규정된 현행 조항에 「소비자 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토록 보완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5-18호)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해당 없음
-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16. 8월 [21일]
 - 2) 입법예고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사용료의 반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
2. 프로그램의 취소·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용료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1.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. 프로그램의 취소·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	제7조(사용료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 1. 현행과 같음 2. 현행과 같음